

제 107 차 이 사 회 회 의 록

일 시 : 2021년 02월 25일 17시 00분 ~ 18시 00분

장 소 :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 56 덕천교회 7층 당회실 (덕천동)

재적이사 : 총 8명 중 6명 참석 (이사 6명, 감사 1명)

안 건 : 1. 법인 및 시설별 2020년 운영(사업) 및 세입세출 결산
2. 법인 및 시설별 2021년 추가경정 예산
3. 시설별 운영규정 개정(로템직업재활센터, 만덕아이꿈자람터)
4. 로템노인요양원 비품 불용 처리
5. 임원 선임

- 대표이사 김정년 목사 : 기도 후

이사 6명 참석으로 개최성수가 됨으로 개최를 선언하다

- 서기 박종건 이사 : 전 회의록을 낭독하고 의견을 묻다.

- 강가환 이사 : 전 회의록을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하다.

- 김동환 이사 : 제청하다.

- 대표이사 : 전 회의록을 원안대로 받자는 안에 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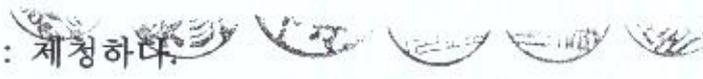
- 대표이사 : 김용순 감사에게 2020년 감사 보고를 요청하다.

- 김용순 감사 : 법인 및 각 시설의 2020년 세입세출 회계와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하다.

- 대표이사 : 위 감사보고서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원본대조필

인

- 김동환 이사 : 법인 및 각 시설의 감사를 통해 세입·세출 회계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시설 운영도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위 안에 동의하다.
- 강가환 이사 :  체청하다.
- 대표이사 :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받자는 안에 이사 전원이 찬성하게 되었음을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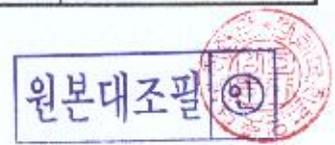
제1안 : 법인 및 시설 2020년 세입세출 결산 심의

- 대표이사 : 본 안건은 2020년 법인 및 시설의 운영(사업) 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에 관련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꼭태영 상임이사, 설미자 원장, 정신모 관장, 김소덕 원장, 제정미 원장 순서로 설명을 듣고 일괄 심의 후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결산금액은 아래와 같다).

- 2020년 세입세출 결산 개요 -

(단위: 원)

구분		세입	세출	차년도 이월금
1. 로템복지재단	일반회계	436,165,880	112,559,791	323,606,089
	수익사업회계	30,000,074	30,000,074	0
2. 로템노인요양원	일반회계	2,405,533,823	2,088,676,966	316,856,857
	특별회계	40,619,776	0	40,619,776
3. 로템재가노인지원센터	일반회계	945,319,730	746,689,178	198,630,552
	특별회계	41,162,168	0	41,162,168
4. 만덕종합사회복지관		3,124,906,659	2,593,917,472	530,989,187
5. 만덕로템노인대학		2,235,691	985,380	1,250,311
6. 만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108,309,043	98,596,735	9,712,308
7. 로템직업재활센터		945,714,247	805,657,042	140,057,205
8. 만덕아이꿈자람터		79,727,698	77,884,331	1,843,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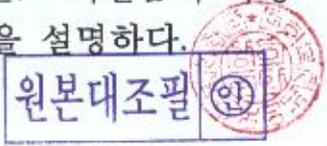
- 대표이사 : 위 안전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광태영 상임이사 : 작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고 올해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사업 보고를 검토해 보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안전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진행하여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 최종환 이사 : 만덕아이꿈자람터 등 외부 야외 활동 시 이용아동과 이용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차도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확보를 위해 힘써 주기를 당부하다.
- 강가환 이사 : 공감한다. 세입·세출 결산액은 이미 내외부 감사를 통해 집행의 명확함을 확인되었기에 위 심의 안에 동의하다.
- 박종건 이사 : 제청하다.
- 대표이사 : 이번 심의 안전의 가·부를 물으니,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안 : 법인 및 시설별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대표이사 : 본 안건은 운영시설별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련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상임이사과 해당 시설장으로부터 각각 설명을 듣고 일괄 심의한 후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시설의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광태영 상임이사과 김소덕 원장, 제정미 원장 순서로 보고하다(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 요 개 정 내 용 =

- 광태영 상임이사 : 로템복지재단의 2021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각각 526,360,000원에서 530,407,000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다. 그 사유로는 세입에서 다른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잡수입이 증가하고 전년도 이월금이 확정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잡지출이 증가하였음을 설명하다.



- 김소덕 원장 : 로템직업재활센터의 2021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1,036,000,000원에서 1,042,930,000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다. 주요 개정사유로 세입에서는 보조금수입과 잡수입이 감소하고 전년도 이월금이 확정됨에 따라 증가하였다. 세출에서는 인건비와 사업비, 예비비가 증가하고 각각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다. 수익금 사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하는데, 사업수입(수익금)은 세출 예산내역서를 근거로 하여 전년도 결산서 상의 수익금 이월금을 기준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주요한 사항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 되고 있어 확산 예방을 위한 소독방역 수요가 작년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센터 수익 창출의 중심이 되는 생산판매사업인 소독방역과 청소는 특성상 일과시간 이외 야간 혹은 주말과 휴일에 작업이 이루어져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직원들의 야간·휴일·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 근로자 임금,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원자재 구입비, 직업재활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반관리운영비와 영업홍보활동비, 직업직공 및 재활사업비, 작업장 환경 개보수 등에 사용할 계획임을 보고하다.
- 제정미 원장 :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만덕아이꿈자람터의 2021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87,904,000원에서 91,886,000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고, 세입과 세출의 주요 개정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다.
- 대표이사 : 각 시설들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박종건 이사 : 전년도 이월금 확정에 따른 개정이 주요 사유이며 그 외 예산 항목에서는 각 시설별로 적절하게 개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 김동환 이사 : 위 의견과 예산안에 동의하다.
- 강가환 이사 : 제청하다.
- 대표이사 : 이번 심의 안건의 가·부를 물으니,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원본대조필 인

제3안 :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 대표이사 : 이번 심의 안건은 운영시설별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설장이 설명하겠다.
- 김소덕 원장 : 로템직업재활센터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운영규정은 보수규칙 제5장 수당에 관한 것으로, 수당 지급기준을 명문화하기 위함임을 자세하게 설명하다(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로템직업재활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

개정대상 운영규정	보수규칙 제5장 수당	
개정사유	수당 지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 전	개정 후
	<p>제15조(수당의 지급) 직원의 수당을 당해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종사자 수당 가액 등 라인)을 준용한다.</p> <p>제16조(초과근무수당) ① 시설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단,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근무명령에 의할 경우에 한한다).</p> <p>②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을 준용한다.</p> <p>제17조(별도수당) 시설장은 제15조와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 이외에 해당 시설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당해연도 예산서와 보수지급 기준을 준용한다.</p>	<p>제15조(수당의 지급) 직원의 수당을 당해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종사자 수당 가액 등 라인)을 준용한다.</p> <p>제16조(초과근무수당) ① 시설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단,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근무명령에 의할 경우에 한한다).</p> <p>②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을 준용한다.</p> <p>제17조(별도수당) ① 시설장은 제15조와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 이외에 해당 시설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체부담 또는 수익금,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당해연도 예산서와 보수지급 기준을 준용한다.</p> <p>② 수당을 지급할 때는 해당 직무의 위험도 및 특수성, 난이도, 책임정도, 전문 자격, 경력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직원의 처우개선 사항과 장기근속 기간도 고려한다.</p>

- 제정미 원장 : 만덕아이꿈자람터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운영규정으로는 제2장 4절 복무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제2장 5절 이용아동의 인권 보장과 6절 사업계획 및 평가를 신설하였음을 설명하다(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본대조필 인 

= 만덕아이꿈자람터 운영규정 개정(안) =

개정대상 운영규정	제2장 4절 복무규정
개정사유	<2021년 다함께돌봄사업단 지침서> 중 아동학대 관련 내용 반영하여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제13조 [복무자세] 모든 직원은 센터의 제 규정과 상사의 명령,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원 상호간의 협력 및 말은바 직책을 완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4조 [기밀유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센터에 관한 직무상의 기밀이나 불리한 사항을 누설할 수 없으며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밀을 존중하여야 한다.</p>	<p>제13조 [복무자세] ①모든 직원은 센터의 제 규정과 상사의 명령,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원 상호간의 협력 및 말은바 직책을 완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모든 직원은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개인적 혹은 사적인 행동으로 본 시설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p> <p>제14조 [카말유자] 삭제</p> <p>제14조 [직무와 관련한 의무 및 제한] ①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센터에 관한 직무상의 기밀이나 불리한 사항을 누설할 수 없으며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밀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모든 직원은 근무시간 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③ 모든 직원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 등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련 법에 근거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이러한 사실을 센터종사자 모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p>
개정대상 운영규정	제2장 5절 이용아동의 인권 보장, 6절 사업계획 및 평가
개정사유	<2021년 다함께돌봄사업단 지침서>중 아동권리에 관한 내용 반영하여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p>제5절 이용아동의 인권 보장</p> <p>제17조 [이용아동의 비밀보장] ①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아동의 사생활이 존중되며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이 철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철저를 기한다. ②센터 이용아동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종사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p> <p>제18조 [센터 이용아동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이용아동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명문화하고 이를 공개한다. ②이용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아동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p> <p>제19조 [차별금지] ①이용아동의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②이용아동(필요시 보호자 포함)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인권보호와 실천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종사자로부터 학대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서 보관한다. ④센터장, 종사자가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학대나 체벌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조치한다.</p> <p>제6절 사업계획 및 평가</p> <p>제20조 [사업계획 및 평가] ①센터 운영목표, 운영방향, 아동관리,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아동의 안전에 대한 5대 의무교육, 성과목표와 평가, 예산 등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년, 월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운영한다.</p>

원본대조필 

- 대표이사 : 위 개정안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최종환 이사 : 현재의 지침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 안에 동의하다.
- 박종건 이사 : 제청하다.
- 대표이사 : 이번 심의 안건의 가·부를 물으니,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4안 로템노인요양원 비품 불용 처리

- 대표이사 : 이번 심의 안건은 로템노인요양원의 비품 불용 처리에 관한 것으로 설미자 원장이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 설미자 원장 : 로템노인요양원에서는 노후화되고 고장이 났으나 수리가 불가능하며 파손된 비품을 불용 처리하고자 함을 보고하다(불용처리 비품목록은 아래와 같다).

로템노인요양원 불용처리 비품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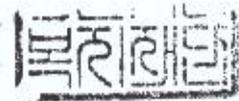
수량	품명	비품번호	취득일자	취득가액	수량	불용일자	불용처리 방법	불용 사유
1	가스자동밥솥	2009049	2009-03-31	2,250,000	1	2020-07-27	폐기	기기 노후
2	냉동냉장고	2009056	2009-03-31	1,390,000	1	2020-08-12	폐기	기기 노후
3	냉장고	2009074	2009-03-31	1,290,000	1	2020-08-12	폐기	기기 노후
4	드레싱카(스텐)	2009043	2009-03-31	120,000	1	2020-11-24	폐기	파손
5	청소기(일반)	2009006	2009-03-31	632,000	1	2020-11-24	폐기	고장수리불가
6	청소기(일반)	2009006-1	2009-03-31	158,000	1	2020-11-24	폐기	고장수리불가
7	컴퓨터 모니터	2009001-1	2009-03-31	200,000	1	2020-08-12	폐기	고장수리불가

원본대조필 

- 대표이사 : 위 불용 처리안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박종건 이사 : 비품을 취득한 일자를 검토해 보니 오랜 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었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품을 불용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다.
- 강가환 이사 : 제청하다.
- 대표이사 : 이번 안건의 가·부를 물으니,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5안 : 임원 선임(대표이사 연임)

- 대표이사 : 본 안건은 법인의 임원인 대표이사의 선임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인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임)에 의하면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해야 하고, 제18조(임원의 임기 등)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경우 후임자를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곽태영 상임이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다.
- 곽태영 상임이사 : 이사 선임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 현재 대표이사가 2021년 03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기를 바라다.
- 강가환 이사 : 현 대표이사가 연임할 것을 제안하다.
- 대표이사 : 위 안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박종건 이사 : 위 안에 동의하다.
- 최종환 이사 : 제청하다.
- 대표이사 : 이번 안의 가·부를 물으니,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대표이사 : 이사들의 참석과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이사회가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하여 감사 인사를 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박종건 이사 : 회의록을 낭독하고 이사전원이 기명날인 하다.
- 대표이사 : 기도 후 폐회를 선언하다.

대표이사 김경년 (인) 이 사 각 가 환 (인)
 상임이사 박태영 (인) 이 사 최종환 (인)
 이 사 박종건 (인) 이 사 권증환 (인)
 감 사 김용순 (인)

2021년 02월 25일

사회복지법인 로템복지재단

